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656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년트랙 기금교원 성과급 운영 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무과), 02-970-6023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연구산학과), 02-970-9155

제정 2021. 12. 10.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년트랙 기금교원의 성과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가대상) 정년트랙 기금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 성과평가 대상은 매년 2월 말일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정년트랙 기금교원(파견, 휴직자, 직위해제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교원 등을 포함하되, 매년 1월~2월말 신규 임용된 교원은 제외)으로 한다.
- 제3조(평가 주기 및 대상) ① 교원 성과평가는 1년 단위로 하며, 평가대상기간은 전년도 3월 1일부터 해당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 임용자의 경우모든 업적은 본 대학교 임용일 이후의 업적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② 성과평가기준일은 매년 2월 말일로 한다.
- 제4조(평가의 영역과 정의) 교원 성과평가 영역은 산학협력 분야에 대한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평가단위) 평가단위는 산학협력연구중점교원, 산학협력교육중점교원으로 나

누어 설정하되 단위별 최소인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6조(평가 등급별 인원 및 지급액 비율) ① 교원 성과평가에 따른 평가 등급별 인원 및 지급액 비율은 다음과 같다.

등 급	S등급	A등급 이상	B등급 이상	C등급
성과급 인원비율	20% 이내	80% 이내	100% 이내	-
성과급 지급액 비율	1.6β	1.2β	0.7β	0.00β

※ β: 성과급 기준액

- ② 등급별 인원 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 1. 정수 인원을 우선 배정
- 2.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높은 순서로 배정
- 3.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같은 경우 상위등급의 인원으로 배정
- ③ 성과급 최하위 C등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성과급평가위원회 구성) ① 성과급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연구기획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2명의 교수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8조(성과급평가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 1. 교원 성과평가 기준과 평가단위에 관한 사항
- 2. 교원 성과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
- 3. 교원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요청에 관한 사항
- 4. 교원 성과평가 성과급 기준액 설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교원 성과평가와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성과평가 절차) ① 평가 대상 교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년트랙 기금교 원 성과기술서"를 소속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소속 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년트랙 기금교원 성과 평정표"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성과기술서, 제2항의 평가결과에 대한 심사를 거쳐 별지 제3호서식의 "정년트랙 기금교원 성과평가 결과표"에 따라 성과등급 및 지 급액을 결정한다.
 - ④ 총장은 성과평가 심사에 따른 성과등급을 교원 개인별로 통보한다.
- 제10조(이의신청) ① 평가대상 교원은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성과평가 일정 미준수, 업적 등록 누락 등본인 과실 사유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② 총장은 이의신청한 교원의 소명자료를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성과급 지급 제외) ①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사람은 성과등 급의 최하위에 배치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평가 대상기간 중 휴가, 휴직, 직위해제, 신규 임용, 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을 말한다.
- 제12조(평가결과의 비공개) 교원 성과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와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3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제656호, 2021. 12.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성과급 최하위 C등급 기준

[교육]

- 매 학년도 학칙 상 책임시수 미달(1시간 이상) 교원
 - 책임시수 기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년트랙 기금교원 규정」제24조제2항
- 합강·폐강 등으로 인한 시수 인정 기준
 - 1학기 미달 책임 시수는 2학기에 초과 강의하는 경우 인정하며, 2학기 미달 책임시수는 다음 학년도 1학기 초과 강의 시 책임시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발령유형에 따른 책임시수 적용 기준

발령유형	책임시수 적용 기준
신임교원 (1년 미만자)	임용 후 최초 성과평가 시 책임시수 기준 적용 유예
감면시수가 있는 교원	책임시수에서 감면시수를 제외한 시수로 책임시수 산정
출산휴가(병가)자	해당 발령기간에 해당하는 학기 동안 책임시수 기준 적용 유예
파견자, 휴직자 (육아휴직 포함)	단, 병가자는 1개월 이상 진단서 제출 시 인정
기타	그 밖의 발령유형에 따라 성과평가위원회에서 개별 심의 후 결정

[연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년트랙 기금교원 인사규정」 별표 2 '산학협력 분야 연구실적 물 인정범위 및 인정률'에 따라 산정한 연구실적이 5%미만인 경우

【윤리】

- 해당 연도 성과급 지급대상기간 중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등) 사실이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확정(판정)된 경우
 - 사실이 확정(판정)된 성과급 지급 해당 연도 1회에 한하여 미지급
 - ※ 연구부정행위가 확정(판정)되어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대학 교원에 대한 당초 처분(판정)이 불 복구제절차를 거쳐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미 지급된 연도의 성과급을 소급하여 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자,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 년인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및「도로교통법」제44조 제2항의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징계자

[별지 제1호서식]

정년트랙 기금교원 성과기술서

○ 평가대상 기간 : 예) 2021. 3. 1.부터 2022. 2. 28.까지

ᇳ기대사다	소 속	직 급	최초임용일	성 명	서명	
평가대상자						

■ 업무 추진 실적

예)

□ 00사업 수주

• 사업개요: (주관) 산업자원부, (기간) 2021. 3. ~ 2024. 5. 총 3년 (사업비) 00년도 00억원, 총 00억원

주요성과: ~~~기대효과: ~~~

※ 필요시 별지 사용

■ 연구실적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년트랙 기금교원 인사규정」 별표2 '산학협력분야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및 인정률'에 따라 연구실적을 산정한다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연구실적물	인정률				
예)산학교육	○ 산학협력 캡스톤디자인 지도 - 7명 지도(21.1학기 3명, 21.2학기 4명) - 7명 × 0.2%=1.4%	1.4%				
합 계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부서장 : 성명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정년트랙 기금교원 성과 평정표

 심사대상자
 소속 :
 직급 :
 성명 :

평가분야	평정항목	평정기준 및 점수			평정방법		
평가군약 	4084	평정기준	점수	평점	ক' ঠ ক ন্ত্র		
1. 교육	강의 충실도	강의평가결과 활용	10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학기별 취득점수 의 합을 학기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학기별 강의 실적이 없는 경우, 기금교원의 평균 점수를 활용한다. ○최근 1년간의 실적을 평가한다.		
2. 연구	연구실적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50 40 30 20 10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년트랙 기금 교원 인사규정」 별표2 '산학협력 분야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및 인정률'에 해당하는 연구실적을 대상으로 평가 한다.		
3. 직무태도	직 무수 행 능력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20 15 10 8 5		○ 산학협력을 위한 추진력, 기획력, 협상력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이 평정한다.		
	근무자세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20 15 10 8 5		○ 법령의 준수 여부, 성실성, 책임성, 인격 및 품의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이 평정 한다.		
4. 상벌 (가감점)	훈·포장 등	훈포장(5), 대통령표창(3), 국무총리·장관표창(1) 정직(-5), 감봉(-3), 견책(-1)	5		○평가기간 동안 수여·처분 받은 사항 중 최고점수에 해당하는 1개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감점은 해당되는 모든 것을 적용한다.		
		평점계	105				

※ 본 평정표는 밀봉・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평정자 (직위)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성과급평가위원회 평가결과표

○ 평가대상 기간 : 예) 2021. 3. 1.부터 2022. 2. 28.까지

○ 평가대상 단위 : 예) 산학협력연구중점교원

평가순위	평가단위 등급	성 명	근무부서	직책 또는 담당직무	평가자 원점수
예시) 1	S	000			99

※ 작성요령

- **평가단위 등급**은 평가단위내 순위를 조정하면서 부여한 등급을 기재한다.
 - * 평가등급의 수와 비율: 평가단위에서의 평가등급은 "S", "A ", "B ", "C"로 하며, 평가단 위별 인원은 "S"등급 상위 20% 이내, "A"등급 이상은 80% 이내, "B"등급 이상은 100% 이내의 비율로 분포되도록 함
- 평가자 원점수는 별지2호에 따라 당초 소속 부서장이 평가한 점수를 기재한다.

※ 평가위원

직 위 (또는 소속)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